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편의시설 모니터링 업무의 법적 근거 마련〉

■ 최보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4105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은 호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2
-----------------	---

I. 개요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최보윤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11. 11.

(3) 회 부 일 : 2025. 11. 1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이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사후관리 규정이 없으며,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되는 편의시설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시행되고 있어 편의시설 설치 이후 사후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기관의 장이 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편의시설의 설치와 사후관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신설).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시설주관기관이 시설주등이 설치한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9조의4(편의시설 모니터링) ①</u> <u>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등이 설치한 편의시설이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u> <u>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 <u>③ 시설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라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 <u>④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내</u>

	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2. 검토의견

- 현행법에서는 ‘시설주관기관’(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등)이 ‘대상시설’(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건립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설주관기관에 의하여 선정된 대행기관이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등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업무를 규정하고 있음.

- 현재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소속 중앙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및 동 협회에서 인증한 광역센터 및 기초센터에서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施設主)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4.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육감을 말한다.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들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①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등이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검토 등을 통하여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대상시설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주등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적합성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개정안은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이후에도 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시간이 지나 기 설치된 편의시설이 현행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상황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편의시설 관리의 지속성·책임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과 같은 이동 약자의 접근성·안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보건복지부와 장애인편의증진기술증진센터에서 대상시설의 사용 승인 이후, 장애인 편의시설의 유지·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24년도에 실시한 운영실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 전국 1,938개소 대상시설¹⁾ 중 장애인 편의시설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건물은 1,367개소(유지·관리율 70.5%), 관리가 미흡한 건물은 571개소(훼손·철거율 29.5%)로 나타났다.²⁾

□ 다만, 개정안의 취지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결과, 편의시설이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지 않거나 훼손·철거된 경우,

시설주관기관이 보수·개선 등을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인증) 제도의 경우는 현행법 제10조의5³⁾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사한 결과,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유지·관리되고 있는 대상시설은 시설주에게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 전국의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 기준적합성 확인 결과 편의시설을 적절하게 설치한 대상시설 중 사용승인(2023년) 및 BF 본인증(2023~2024년)이 완료된 건축물 2,000개 중 조사불가 62개소를 제외한 것임.

2) 보건복지부·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2024). 2024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실태 모니터링 보고서.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인증의 사후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이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아울러, 개정안 부칙은 시행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전 홍보와 하위법령 정비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일을 연기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편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 다만, 세부사항 마련을 위한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1년 후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2